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0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7일, 도병두 의위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도병두 의원)

가. 제안이유

-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의견청취 및 법률상담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① 제정 배경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일반적(광의)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협의로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 * 플랫폼을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과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구분 가능 → 광의는 두 유형 모두를 포함
-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약 179만명(취업자의 7.4%)이 있으며,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취업자의 0.9%)으로, 이 중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이며, 배달기사가 가장 많음(52%)¹⁾

<플랫폼 종사자 규모('20. 노동연구원)>

	취업자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사람			
		전체	상품거래 등	플랫폼 종사자	
				광의	협의
비율(%)	100	7.6	0.2	7.4	0.92
추정규모(만명)	2,400	183	3.8	179	22.3

1)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12.2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플랫폼 종사자(협약) 유형(단위: %)>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주업·부업 여부(%)	
단순작업	34.0	배달	67.8		
창작	26.2	기타	13.0		
IT	19.8	전문서비스	11.8		
전문서비스	15.0	가사	5.0		
기타	5.0	주문제작	2.4		
소계	100.0	소계	100.0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의 의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분 야	디자인, 마케팅, 번역, IT 개발 등 전문분야	배달, 가사 등
전업or부업	주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운영 형태		
정책 수요 (20.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상담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

-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세분화된 마이크로 과업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일자리라는 특징을 가지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있으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
- 국회 입법 현황은 장철민의원 등 20인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8908)」을 2021년 3월 18일에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음.

②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금천구에 주소를 두거나 금천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 제9조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한 노무상담 등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③ 종합의견

-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현재 취업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 역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노동여건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현행법상 정의가 어려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